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1-528 호

서울시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

서울시 코로나 19 방역강화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, 홀덤펍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17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집합금지 조치

○ 기 간 : 2021년 9월 17일(금) 0시 ~ 2021년 10월 3일(일) 24시

○ 대 상

-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

※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·무신고 업소 포함(일반음식점 등도 적용)

- 서울시 소재 콜라텍, 홀덤펍

○ 조치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

○ 위반 시 조치사항

-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
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※ 홀덤펍: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일반·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·음료·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

2. 집합제한(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조치

○ 기 간 : 2021년 9월 17일(금) 0시 ~ 2021년 10월 3일(일) 24시

○ 대 상 : 서울시 소재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

○ 조치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(시설별 방역수칙[1] 준수의무화) 조치

1)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

※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
※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
- 단, 적용기간(9.6.~10.3.)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가정 및 식당·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(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/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)

○ 위반 시 조치사항
-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-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·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-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-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○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
-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*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
  *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① 집단감염(10인 이상) 발생 시 ②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
  * 집합금지 기간 : 1주일

3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3조

-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

- (제1항)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

※ **마스크 착용**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」에 따름
※ **사적모임, 행사 등**의 경우 서울특별시「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 안내」공고에 따름

4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9월 17일(금) 0시부터

5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6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※ 기 시행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500호(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)는 본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고시로 대체함

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. 끝.

붙임 | **시설별 방역수칙**

□ 식당·카페 (일반·휴게음식점 및 제과점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**① 방역수칙 준수**	
	▪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▪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▪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▪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▪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안내 ▪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안내	▪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	④ 마스크 착용	
	▪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	▪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	⑤ 손씻기	
	▪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▪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▪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	▪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	⑦ 환기하기	
	▪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▪ 창문, 출입문 상시 개방(권고) -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內 -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, 출입문 개방, 환풍기 가동 -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▪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(권고) -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	
	⑧ 소독하기	
	▪**일 1회 이상 소독**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	
	▪방역관리자 지정 ▪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추가 수칙	**① 이용시간 제한**	
	▪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	▪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
	② 춤추기, 음악소리, 테이블 이동 금지	
	▪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▪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▪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	▪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▪테이블 간 이동 금지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추가 수칙	③ 공용집게 사용 등	
	■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■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)
	④ 기타	
	■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 ■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안내 · 공연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(이동설치 불가) · 공연자 마스크 착용 ·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1인 공연 즉시 마이크5 캡 교체 ·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(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)	■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이용 ■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· 공연자 마스크 착용 ·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(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)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대화 금지 안내	▲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	★ 추가적용수칙 :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(의무)	
	▲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※ 2m 거리 유지 안되는 경우, 1인씩 이용안내	▲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※ 2m 거리 유지 안되는 경우, 1인씩 이용안내
화장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배치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▲ 대화 자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▲ 대화 자제
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 창구	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< 좌석 도식도(예) >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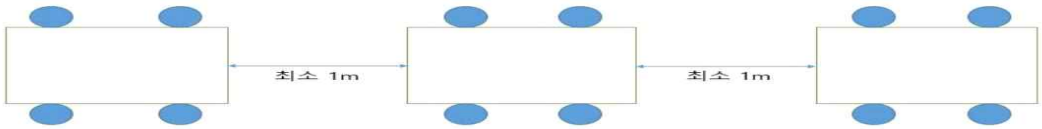
좌석 한 칸 띄워앉기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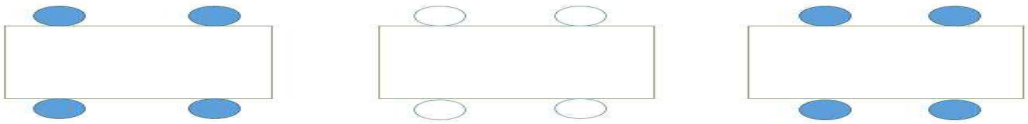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실선 - 가림막)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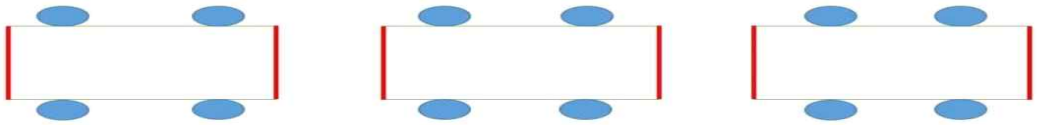

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